

2026. 7.

중국 중국판권협회, 숏폼드라마 분야 ‘통지-삭제’ 규칙 강화 지침 발표

국회입법조사처
백지연

1. 발표 배경

중국판권협회(中国版权协会)는 2026년 4월 26일 「숏폼드라마 분야 ‘통지-삭제(通知—删除)’ 규칙 강화에 관한 업무 지침(이하 ‘지침’)의 전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2025년 8월 1일 동 협회 숏폼드라마업무위원회(微短剧工作委员会)가 ‘숏폼드라마 산업 저작권 사회 거버넌스 포럼(微短剧行业版权社会共治论坛)’에서 먼저 내놓았던 지침을 협회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통지-삭제’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분야별 실시 세칙을 마련하려는 국가판권국의 업무 방침을 구체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민법전」, 「저작권법」, 「전송권 보호조례」 등을 근거로 삼아, 급성장한 숏폼드라마 분야에서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권리자·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 대상은 콘텐츠를 저장·제공하는 사업자, 검색·링크 서비스 사업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등 이른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다.

2. 주요 내용

1) 신고 창구 정비 및 권리 행사 제약 금지

지침은 우선 신고 창구를 정비하고 권리자의 신고를 제약하는 요소를 없앨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별도 시스템·제품 기능·이메일 등 명확하고 편리한 신고 창구를 갖추고 다양한 신고 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지침은 권리자의 신고를 제약하는 사항으로 일일 신고 횟수나 신고 가능 작품 수의 제한, 통지 자료 파일 용량의 불합리한 제한, 일괄 신고를 받지 않고 개별 링크 신고만 허용, 숏폼드라마 감독·배우의 실명 등 불필요한 정보의 필수 기재 요구 등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¹⁾

1) 구체적으로 지침 제3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독립 시스템 또는 제품 기능에 권리자의 권리 구제 신고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 다음 사항을 열거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 (1) 일일 신고 횟수의 제한(단, 동일 작품·동일 침해 링크에 대한 반복 신고는 제외함), (2) 일일 신고 가능 작품 수의 제한, (3) 통지 자료 파일 용량의 불합리한 제한, (4)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자가 신고에 사용하는 계정의 정상적 로그인 또는 신고에 필요한 관련 계정 기능을 제한하는 것, (5) 개별 침해 링크에 대한 신고 경로만 설정하고 일괄 신고를 받지 아니하여 권리자의 신고 효율을 저해하는 것, (6) 숏폼드라마 감독·배우의 실명 정보 등을 신고 필수 기재 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불합리한 필수 기재 항목을 두는 것, (7) 그 밖에 법령이 정한 자료 요건 및 심사 기준을 초과하는 것.

2) 숏폼드라마 특성을 반영한 처리 절차

다음으로 지침은 숏폼드라마라는 장르의 특성을 처리 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통지 자료 요건과 기초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일괄 신고 기능 또는 경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 기록은 최소 3개월간 보관하고 관리자가 그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권리 증명에 대한 합리적 심사

관리자가 제출하여야 할 증명 자료와 그 심사 기준에 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관리자는 서면 통지서에 성명·연락처, 삭제 또는 링크 차단을 요구하는 침해 작품의 명칭과 네트워크 주소, 권리 증명 및 침해에 관한 기초 증명 자료를 기재하여야 하고, 권리 증명으로는 저작권 등록증, 권리 취득 계약·이용허락 계약서·권리 성명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콘텐츠의 최초 공개 시점을 보여주는 타임스탬프 등의 전자 증명도 허용한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심사 시 합리성 원칙에 따라 관리자에게 입증책임을 임의로 전가할 수 없다. 특히 미공개 숏폼드라마에 대해 원본 콘텐츠 최초 공개 링크를 권리 귀속의 필수 증명 자료로 요구하거나, 작품 명칭이 침해물 또는 원작 IP의 문자 작품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처리 시한 단축 및 반(反)통지 절차

처리 시한과 관련하여서는, 요건을 갖춘 통지서를 접수한 경우 처리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침해 의심 작품을 삭제하거나 링크를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성급 판권국이 발표한 ‘중점 작품 저작권 보호 사전경보 명단(重点作品版权保护预警名单)’에 포함된 작품에 대해서는 처리 효율을 한층 높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통지서를 전송받은 대상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성명과 권리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관리자에게 전송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관리자의 제소·신고 통지가 없을 경우 삭제된 작품 또는 차단된 링크를 복원하여야 한다.

5) 반복 침해자에 대한 제재 강화

지침은 반복 침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정도에 따라 경고,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 제한, 일정 기간 또는 영구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반복 침해 계정에는 가중하여 제재하여야 하며, 나아가 판권 업계 협회가 주도하여 플랫폼 간 공동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상습 침해 이용자에 대해 여러 플랫폼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이번 지침은 중국에서 급성장한 숏폼드라마 산업의 침해 대응 실무를 업계 자율 규범의 형태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일 신고 횟수 제한이나 불합리한 필수 기재 항목 등 그동안 관리자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던 관행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금지하고, 처리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도록 한 점은 권리 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침은 법령이 아니라 협회 차원의 자율 규범이어서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 사항과 권장 사항이 혼재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국가판권국이 추진 중인 분야별 ‘통지-삭제’ 실시 세칙 마련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이 신형 콘텐츠 분야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통지-삭제’ 의무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해 나갈지를 가늠하게 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https://www.ncac.gov.cn/xxfb/tzgg/202604/t20260428_987150.html
- <https://stock.10jqka.com.cn/20260503/c676445943.shtml>